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 알림

- 1.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23.12.13.자로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유관 기관·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가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통

수신자 본부(55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방청장(54개 전부서), 국무조정실장(규 제심사관리관),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 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결 2023. 12. 13. 의약품정책과 전결 연구위원 사무관

최지은 이경 과장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12694 (2023. 12. 13.)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22 팩스번호 043-719-2606 / 대국민 공개 /jieunchoi1@mail.go.kr

힘내라 대한민국!